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가단2085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건

피고B

변론 종결2022. 9. 6.

판결 선고2022. 10.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3. 30.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약정을 5,150,6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50,6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7. 20. C에게 9,400,000원을 만기 2021. 7. 20., 이율 연 12.4%, 연체이율 연 15.4%로 각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21. 3. 30.경 보험계약자 명의를 모친인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5,150,617원이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22. 1. 13. 현재 잔액은 원금 9,400,000원, 이자 1,106,853원 합계 10,506,8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는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해약환급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인 5,150,617원,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출채무 9,380,000원,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7,387,000원이 존재하여, 재산상태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E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명의변경은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어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피고가 납부하다가, C이 성인이 되면서 계약자 명의를 C에게 이전하였으나, 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C이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할 것을 우려하여 계약자 명의를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가 상당 부분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F위원회에 의한 채무조정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C이 F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2022. 4. 1. F위원회의 중재로 채무조정이 되었는바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하여도, F위원회의 채무조정 승인만으로 C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감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변제금 납부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바. 소결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보험계약의 명의 자체를 C로 돌려놓으면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까지 C의 채무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액인 5,150,617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액 5,150,617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함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가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정훈

별지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변론재개 사유는 위 채무조정 주장을 다시 하는 것이므로,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